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기후환경본부

☐ 총 1건 건의

☐ 목 록

연 번	건의 제목	건의부서
1	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·변경업무 처리기관 변경 건의 (전기안전관리법 개정)	친환경차량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·변경업무 처리기관 변경 [전기안전관리법 개정] (친환경차량과, '25.8.7.)	□ 현황 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·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(제21조의2) ※ '25.5.27. 공포, '25.11.28. 시행 □ 문제점 ○ 현재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기의 실질적 관리업무 중으로, 설치 신고·변경업무를 시·도지사가 처리 시 시민 혼선 및 업무 효율성 저해 - 자치구 소관업무 : 충전시설 설치 유예·면제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, 미설치 시설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※ 서울시 충전기 : 78,358기('25.7.기준) 연간 약 9,000기 신설 □ 건의내용 ○ 신고 처리기관 변경 - (현행) 시·도지사 → (개정) 시장·군수·구청장 □ 관련 규정 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1조의2, 제52조	산업통상자원부